

의안번호	제 21 호
의결 연월일	2003. 6. .

의결사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 연월일	2003. 6. 9.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일자	2003. 6. 9.
제출자	사천시장

### 1. 개정이유

가.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제28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작성·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 에서는 '99년 8월 시민·기업· 우리시가 협의하여 푸른사천21 을 작성하였음

나.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푸른사천21실천협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 필요

다. 이에 따라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관련조항을 신설

### 2. 주요골자

가. 푸른사천21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푸른사천21실천협회의 위원구성·임기 및 기능 명시(안 제23조, 제24조)

나.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사항(안 제26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 명시(안 제27조)

### 3. 법적근거

-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제28장(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1992년 유엔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21)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실천 을 위함.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없음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 연간 50,000천원 정도

- 환경관련 행사경비 : 5,000천원
- 실천사업 추진경비(추진단체 지원경비 등) : 26,800천원
- 소식지, 보고서 작성 등 : 3,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50,000원×16명×4회 = 3,200천원
- 활동비(사무국장) : 1,000,000원×1명×12월 = 12,000천원

○ 예산확보계획

- 2003년도 당초예산 : 20,000천원 기 확보
- 부족예산(30,000천원) : 2003년 2회 추경 시 확보계획
- ※ 추가예산 확보 불가시 : 확보시 까지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  
하고 추진경비 및 기타경비 절감조치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3. 14. ~ 2003. 4. 2.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공고(일간지) 및 인터넷 게시공고

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

○ 사천시환경위원회 회의(2003. 4. 17)시 조례(안) 재검토 요구

- 검토기간 : 2003. 4. 18 ~ 4. 30

- 검토 : 전위원

- 의견제출 : 김분자 위원(사천YWCA)

· 조례(안) 제23조 제2항중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을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으로 수정

(3) 규제심사 : 없음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3조 내지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사천21의 효율적인 추진
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3. 푸른사천21 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26조(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칙) 실천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3장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p> <p>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p> <p>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푸른사천21의 효율적인 추진</li> <li>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li> <li>3. 푸른사천21 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li> <li>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25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 상근직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6조(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협의회의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운영비</li> <li>2.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li> <li>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ol> <p>②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p> <p>③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신 설)	<p>제2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제28조(운영규칙) 실천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신 설)	<p><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